

통계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4년 10월말

구분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용역 사무소	합 계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이상	소 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021	5,021	242	484	44	132	3	12	0	0	5,310	5,649	1,397	1,397	263	520	93	279	28	109	18	90	7	42	5	35	6	54	1,817	2,526	9	9	7,136	8,184	100.0%	100.0%
서울	1,250	1,250	69	138	18	54					1,337	1,442	842	842	169	338	55	165	17	68	8	40	4	24	5	35	4	35	1,104	1,547	8	8	2,449	2,997	34.3%	36.6%
부산	532	532	29	58	3	9					564	599	65	65	14	28	5	15	2	8	4	20	2	12					92	148			656	747	9.2%	9.1%
대구	392	392	38	78	12	36	1	4			443	510	27	27	12	24	11	33			4	20							54	104			497	614	7.0%	7.5%
인천	226	226	3	6							229	232	44	44	7	13													51	57			280	289	3.9%	3.5%
광주	192	192	3	6							195	198	33	33	10	20	3	9	4	16			1	6					51	84			246	282	3.4%	3.4%
대전	209	209	18	36	3	9					230	254	25	25	6	12	2	6									1	11	34	54			264	308	3.7%	3.8%
울산	132	132	9	18	5	15	1	4			147	169	14	14	1	2	1	3											16	19			163	188	2.3%	2.3%
경기	639	639	27	52							666	691	217	217	26	47	8	25			1	5						252	294			918	985	12.9%	12.0%	
강원	154	154	5	10							159	164	23	23	3	6					1	5							27	34			186	198	2.6%	2.4%
충북	160	160	9	18							169	178	18	18	6	12	0	0	2	8							1	8	27	46			196	224	2.7%	2.7%
충남	147	147	3	6							150	153	30	30			2	6	1	4									33	40			183	193	2.6%	2.4%
전북	183	183	1	2	1	3					185	188	6	6	2	4	4	11	2	5									14	26			199	214	2.8%	2.6%
전남	131	131									131	131	9	9			1	3											10	12			141	143	2.0%	1.7%
경북	259	259	15	30	0	0					274	289	21	21	1	2	1	3											23	26	1	1	298	316	4.2%	3.9%
경남	313	313	12	24	2	6	1	4			328	347	17	17	6	12													23	29			351	376	4.9%	4.6%
제주	102	102	1	2							103	104	6	6															6	6			109	110	1.5%	1.3%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회 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율	
합 계	8,174	10	8,184	100.0%	27
서울	2,994	3	2,997	36.6%	15
부산	746	1	747	9.1%	8
대구	614	0	614	7.5%	0
인천	289	0	289	3.5%	0
광주	282	0	282	3.4%	0
대전	307	1	308	3.8%	0
울산	188	0	188	2.3%	0
경기	983	2	985	12.0%	2
강원	198	0	198	2.4%	0
충북	224	0	224	2.7%	1
충남	190	3	193	2.4%	0
전북	214	0	214	2.6%	0
전남	143	0	143	1.7%	0
경북	316	0	316	3.9%	1
경남	376	0	376	4.6%	0
제주	110	0	110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사무소	합 계	비 고
회원 수	5,649	2,526	9	8,184	
비율	69.0%	30.9%	0.1%	100.0%	
사무소수	5,310	1,817	9	7,136	
비율	74.4%	25.5%	0.1%	100.0%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안내

매년 1월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지난해와 달라진 각종 공제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47조, 부칙2003.7.30개정 제2조 제항)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액이 - 500만원 이하 : 전액 - 500~1,500만원 : 47.5% - 1,500~3,000만원 : 15% - 3,000~4,500만원 : 10% - 4,500만원 초과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액이 - 500만원 이하 : 전액 - 500~1,500만원 : 50% - 1,500~3,000만원 : 15% - 3,000~4,500만원 : 10% - 4,500만원 초과 : 5%

2.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조정 (소득세법 제50조)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의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55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의 자 -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가족의 범위 확대 - 계부·계모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 - 요건 :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과 혼인 관계인이 증명되는 자 -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 포함

3. 부양자가 변경되는 경우 특별공제 방법 개선 (소득세법 제50조)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를 당해연도 과세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 -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지급한 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함 (예) 과세연도 중 혼인한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4. 본인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폐지 (소득세법 제52조 제항 제3호)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소득공제 - 공제 한도 : 연 500만원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공제 한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폐지 ※ 의료비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급한 의료비

5.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9조, 부칙2003.7.30 개정 제2조 제2항)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세액이 - 50만원 이하 : 50% 공제 - 50만원 초과 : 250,000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 공제 한도 : 4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를 상향조정 (산출세액이) - 50만원 이하 : 55% 공제 - 50만원 초과 : 275,000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 공제 한도 상향조정 : 50만원

6.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소득세법 제51조 제항 제4호,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움)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세이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해 기본공제외에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 대상 : 여성인 근로자 - 공제금액 : 연 50만원 - 영유아에 대한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 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대상 추가 및 공제금액 확대 - 대상 :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 - 공제금액 : 연 100만원 -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 중복 허용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수당·보육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한도 : 월 10만원

7.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항 제4호)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부양가족 1인당 다음을 한도로 소득공제 · 유치원생 이하 : 연 150만원 · 초·중·고생 : 연 200만원 · 대학 생 : 연 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조정 · 유치원생 이하 : 연 200만원 · 초·중·고생 : 연 200만원 · 대학생 : 연 700만원

8. 결혼·이사·장례비 공제제도 신설 (소득세법 제52조 제9항)

종 전	개 정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 공제요건 -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공제금액 - 각 사유당 100만원

9. 외국인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간편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2, 동법시행령 제6조2)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해외근무수당 지급여부 등에 따라 ① 또는 ② 적용 ① 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 월정액급여의 40% ② 소득공제 - 공제대상 ·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외국인임직원 ·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하는 외국인임직원 - 공제비용 · 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 월세 지출액 - 공제 한도 · (월정액급여 연간합계액 공제비용)의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①, ② 중에서 선택 ①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 적용하여 분리과세 - 비과세 공제·감면 적용 배제 ② 기본세를 적용체계하에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 비과세를 : 근로소득의 30% ※ 근로소득 = 급여총액에서 과세외를 차감한 금액 ※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 상기 ②를 적용후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을 원천징수 ※ 단일세율 적용시 신청절차 - 외국인근로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 의무자에 신청 -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별지8호서식)

10. 주택자금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주택마련저축불입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 • 차입금 요건 (시행령 제112조) - 상환기간 : 만기 10년 이상 (거처기간포함) -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 공제한도(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 연 6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 -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 폐지) • 차입금 요건 조정 - 상환기간 : 15년 이상 - 거처기간 : 3년이하 - 기존 3월이내 차입한 상환기간 15년 미만의 주택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 공제한도 확대 - 연 1천만원

1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2외)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대상 -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 - 학원비의 지로 납부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연 급여의 10% 초과 사용액을 총사용금액과 직불카드 사용금액 비율로 인분하여 아래의 공제를 적용 · 신용카드 등 : 20% · 직불카드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대상 확대 - 기명신불카드03, 12, 1 이후 사용분 - 현금영수증 (05.1.10후 사용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일원화 -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금액 중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지로(GIRO) 범위 명확화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로로 납부 · 지로이용기반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주번등록번호 · 지로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12.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항 제4호)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 학원, 보육시설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 (학원을 취득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과정에 지출하는 비용) · 독학취득 취득 교육과정 - 독학에의한취득취득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시험과목면제대상 교육과정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 공제 한도 : 연 700만원

※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는 매년 2월말까지 제출(단, 폐업 시는 폐업일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자료제공 및 문의
국세청 납세홍보과(02-397-1564)
E-mail : ho25400@nts.go.kr